

(문의)

구명조끼 유럽(EU) 수출 시 관련 인증은?

www.aceleports.co.kr

(답변)

구명조끼는 개인보호장비로 PPE 규정에 따라 CE마킹 대상으로 보입니다.

PPE 규제는 PPE Directive 89/686/EEC지침(directive)에서 새로운 PPE Regulation (EU) 2016/425 규정(regulation)으로 좀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명조끼(life jacket) 역시 위험등급분류(카테고리)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귀사 제품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Scandia > PPE Regulation 2016/425

<https://www.scandiagear.com/updates/revisedpperegulation/>

▶ C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 개인용 보호장비

해당제품이 개인용 보호 장비(PPE)로 분류될 경우 CE마크를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보호 장비 중 category I에 속할 경우, 기술문서 작성 후 자기적합성선언으로 제조자 스스로 마킹이 가능합니다.

* European Commission > 개인용 보호장비(PPE) (구 지침, 새 규정 개요)

<http://ec.europa.eu/growth/sectors/mechanical-engineering/personal-protective-equipment/>

* New PPE Regulation (EU) 2016/425 새 규정 전문 (2016년 3월 9일 발효)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6R0425>

* European Commission > 개인용 보호장비(PPE) > PPE Regulation Guidelines

- Guide to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16/425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ownload link 클릭, 다운로드)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29201> (1st Edition - April 2018)

관련표준

; PPE 규정 관련 조화규격 목록 에서 확인

* European Commission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harmonised standards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personal-protective-equipment/>

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인증기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CE(PPE) 인증의 비용, 기간과 같은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제품 사양을 송

부하시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www.ktr.or.kr)

담당자: 우동혁 (CE PPE 담당)

연락처: 02-2164-1439

이메일: donghyeokwoo@ktr.or.kr

※ 참고자료

CE(PPE) 인증 관련 추가정보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E (PPE)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87>

▶ 화학물질규정 (REACH, EC No 1907/2006)

유럽 화학물질안전청 (ECHA)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통 이외에도,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Azo염료, Tris (2, 3 dibromopropyl) phosphate 등의 화학물질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REACH: <http://certinfo.or.kr/viewCert.do?certNo=325>

* REACH 법령: http://ec.europa.eu/growth/sectors/chemicals/reach/index_en.htm

시험기관

국내에서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http://www.katri.re.kr>, 02-3668-3000) / 미주, 유럽 시험부서
- FITI시험연구원(FITI, 02-3299-8000, <http://www.fiti.re.kr>) / 해외사업팀 02-3299-8025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1577-0091, <http://www.ktr.or.kr/>) / 양영길 과장 02-2092-3863

▶ 섬유제품 라벨규정 (Textile Regulation (EU) No 1007/2011)

유럽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규정 1007/2011에 의거하여 라벨 부착 또는 새기는 방법으로 제품에 섬유조성을 표시하는 등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취급표기(care labeling)는 국가별로 강제여부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ISO 3758에 따라 표기합니다.

* European Commission > 섬유산업 홈페이지:

http://ec.europa.eu/growth/sectors/fashion/textiles-clothing/index_en.htm

* 유럽연합의 섬유제품의 라벨 관련 규정 EU No. 1007/2011 전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1R1007>

* EU No. 1007/2011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운로드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9808/attachments/1/translations/en/renditions/native>

* European Parliament > Study on Labeling of Textile Products (세탁방법표시)

www.europarl.europa.eu/document/activities/cont/201108/20110825ATT25276/20110825ATT25276EN.pdf

▶ 국가별 요구사항

유럽지침 이외에 지적재산권, 오염규정, 포장, 섬유라벨링, 제품안전(유해염료사용 제한, 잠옷 라벨링 등) 같은 각 국가별 국내업체기준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에는 EU 국가별 지원 인력이 없어 문의하신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시 1) 영국

영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 Safety regulations and labelling requirements

-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2005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5/1803/contents/made>

- The Textile Products (Labelling and Fibre Composition) Regulations 2012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2/1102/contents/made>

- Textile Regulation (EU) No 1007/2011 (유럽지침에 명시된 섬유이름의 올바른 사용)

상기 법령은 안전요구사항과 섬유조성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시오.

* GOV.UK - Import and export clothing, footwear and fashio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https://www.gov.uk/guidance/clothing-footwear-and-fashion>

* GOV.UK > Textile products labelling guida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xtile-products-labelling-and-fibre-composition-regulations-2012-guidance>

▶ 구명조끼 관련 임의인증

구명제품의 특성상 국가에서 강제하는 강제인증이 아니더라도 국제협회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규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규격이 요구되거나 해당 지역별로 인정/통용되는 사항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인증 및 협회를 특정 순서 없이 열거하였으며 아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Royal Yachting Association (RYA)

<https://www.rya.org.uk/>

- Royal Yachting Association (RYA) > Buoyancy Aids & Lifejackets

<https://www.rya.org.uk/knowledge-advice/safe-boating/look-after-yourself/Pages/buoyancy-aids-lifejackets.aspx>

- Royal Yachting Association (RYA) > Levels of Buoyancy

<https://www.rya.org.uk/SiteCollectionDocuments/cruising/Web%20Documents/Regulations%20an>

[d%20Safety/Levels-of-Buoyancy-Info-Sheet.pdf](#)

- UL > Lifejacket Certifications and Assessments (미국)

<https://industries.ul.com/blog/lifejacket-certifications-and-assessments>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USCG (미국해양안전 규제)

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USCG.pdf

- Life Jacket Association

<https://www.lifejacketassociation.org/>

* 참고자료

- www.getoutwiththekids.co.uk > Buoyancy Aids or Life Jackets: what's the difference?

<https://www.getoutwiththekids.co.uk/water/buoyancy-aids-or-life-jackets/>

문 의 처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european/KTMIUI010M.html>

영국 런던 무역관,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OTRA trade doctor <http://tradedoctor.kotra.or.kr/bp/main/BPMAIN040M.html?>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사업 공고문 및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9091/info/ktrInfo.do?key=9093>

사업 문의 : 02-2164-0172~8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 당 100,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신청기간) 19.08.01.(목) ~ 19.08.30.(금) 18:00 (2019년도 지원사업 모집종료)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 중소기업수출지원 > 2019년 道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요약

<https://www.gg.go.kr/international-businessareas>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해외조달시장정보 > 고객지원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http://b2g.exportcenter.go.kr/service/customer/qna/qna_list.jsp

유의사항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콜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 주 의!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